

# 「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이창열 의원이 발의하고, 2023년 10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임.

### 1. 제안이유

평창군민의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가치관 확립을 통해 산림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교육지원과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 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, 군수의 책무(안 제1조 ~ 3조)

나.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다.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7조)

라. 산림교육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 ~ 11조)

### 3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가치관 확립을 통해  
산림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 
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.

○ 주요내용으로는,

산림교육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고,  
활성화 사업을 명시하고 선도기관을 지정하여 위탁·지원할 수  
있도록 하였으며,  
산림교육 지원 및 산림교육전문가 양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 
규정하였습니다.

○ 검토결과,

‘산림교육 활성화 지원’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 
지자체의 자치사무<sup>1)</sup>이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사안이고,  
관계 법령에 위배 및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,  
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※ 관련 입법례: 전국 4개 지자체, 도 내 3개 지자체(강원도, 홍천, 속초)

- 
- 1)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  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농림·수산·상공업 등 산업 진흥  
사. 공유림 관리
  -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  
사. 자연 보호활동